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 국민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행정규칙 개선 사례집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지금 반부패 청렴으로 국격을 높여 선진 일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낡은 제도의 타파와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가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바로 “현장”이라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입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300여 곳이 넘는 현장을 다니고, 1,2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직접 들으며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고충이 있는 곳에 규제가 있고, 규제가 있는 곳에 안일함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각종 제도와 법령, 그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부패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선진국 진입에 발목을 잡는 각종 낡은 제도와 법령을 과감히 개선하고 녹슨 시스템을 정비하여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행정규칙 개선사업”이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 행정기능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부기준과 절차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법령과 달리 외부적 통제절차가 없다보니 국민과 기업에게 “숨어 있는 규제”로 작용하여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력이 큰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을 필두로 하여 전체 37개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1만1천여 건을 순차적으로 검토·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1년 7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 내부규정을 다수 발굴하고 정비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각 부처가 행정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개선·정비를 통해 국민 및 기업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행정규칙 개선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정규칙 개선이 국민과 기업에 미친 각종 편익을 소개하여 향후 각 부처에서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 분야의 법령 및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규칙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행정규칙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의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재 오 

Contents

발간사

02

제1장 행정규칙 개선사업 개관

제1절 행정규칙 개선사업 추진배경	07
제2절 행정규칙 개선사업 추진개요	08
제3절 행정규칙 개선사업 성과	11
제4절 반성 및 향후계획	16

제2장 부처별 주요 개선사례

• 국토해양부	24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35
•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47
• 환경부, 기상청	52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60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71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91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102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116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부처	132
- 국방부, 병무청	
- 국가보훈처	
- 법무부, 대검찰청	
- 문화재청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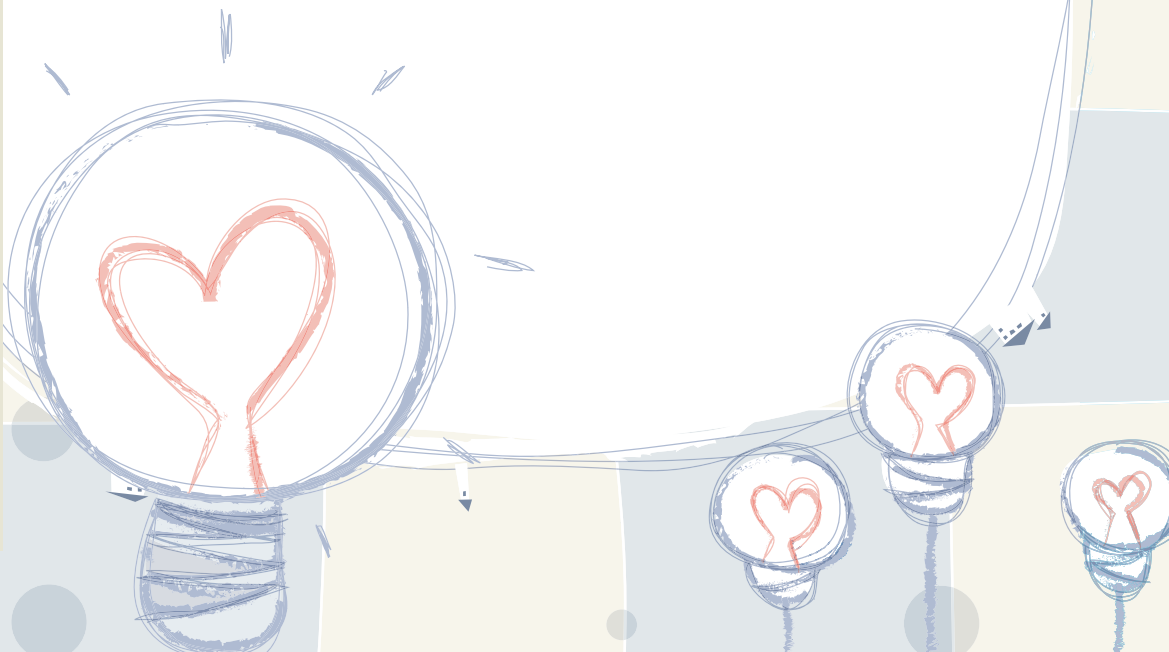
행정규칙 개선사업 개관

제1절 행정규칙 개선사업 추진배경

제2절 행정규칙 개선사업 추진개요

제3절 행정규칙 개선사업 성과

제4절 반성 및 향후계획



행정규칙 개선사업 개관

- 평일 바쁜 직장생활에 은행을 찾을 여유조차 없던 김씨는 주말 친구 결혼식을 맞아 우체국 자동인출기에서 축의금을 인출하고 조금 기분이 상했다. 분명 14시 이전에 인출했음에도 소액(500원)이긴 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체국으로 문의한 결과 우체국 내부규정 상 13시 30분 이후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은 김씨는 더욱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 시중은행보다 이용이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면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1 행정규칙 개선사업 추진배경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 고시·훈령·예규·지침·공고 등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고 행정조직이 방대해지면서 법집행을 위한 통일된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또한 확대되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법령과 다르게 외부적 통제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복잡한 절차를 양산하여 행정을 지연시키거나 서류나 형식에 집착하여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행정, 즉 ‘레드 테이프’ 현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숨어있는 걸림돌 때문에 행정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탓이 크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데 사실상 결정적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관계기관은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1만여 건에 달하는 전 부처 행정규칙을 전면 개선·정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2 행정규칙 개선사업 추진개요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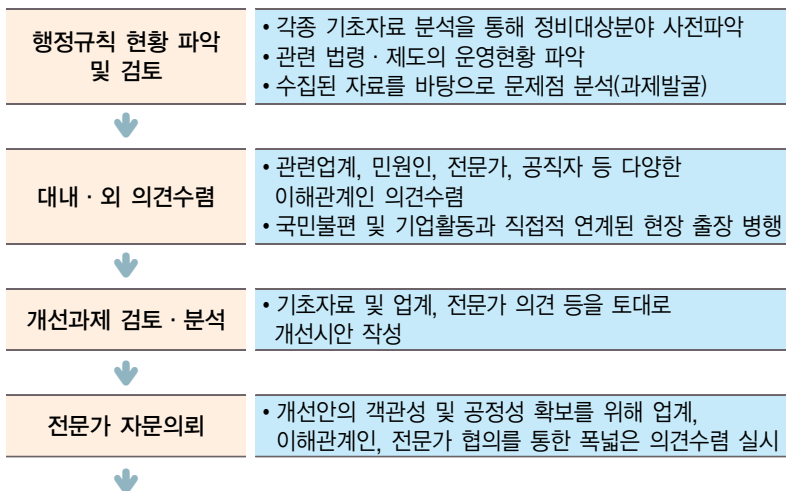
부처 간의 중복 추진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규칙 정비 관련기관 및 규제기관이 합동으로 ‘행정규칙 개선 T/F’를 구성하였다.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주축이 되어 개선과제 발굴을 담당하고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에서는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1만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행정규칙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력이 큰 부처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정비하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체계와 해당 부처가 주관하고 우리 위원회가 컨설팅하는 체계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체계〉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부처합동 추진(권익위, 법제처, 해당 부처) |
| • 해당부처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가 컨설팅 지원(권익위, 해당 부처) |

● 행정규칙 개선·정비 절차



개선과제 기관협의	- 발굴된 개선과제를 수시로 부처 담당부서와 모니터링 - 개선과제를 일괄하여 부처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
개선과제 확정 및 차관·국무회의 보고	-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과제 확정 - 차관회의, 국무회의 보고 후 해당 부처 이행 통보
이행점검	- 확정 통보된 과제는 분기별로 조치사항을 통보받아 관리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행정규칙 개선 사업의 특징

•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성 있는 개선의견 도출

현실성 있는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기업들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을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개선의견에 반영하였다.



〈군산시 간담회 현장('08.9.30)〉

이렇게 도출된 개선의견은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거쳐 타당성·적실성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에 대하여 해당부처에서 80%가 넘는 수용률을 보이게 되었다.

〈개선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결과〉

의견수렴	현장 방문	국민·기업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개선안 발굴·검토·효과)
		개별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계 : 605건	126건	351건	46건	82건

* 지방자치단체(248개)에 대한 의견수렴 제외

• 소관부처와 협동작업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그동안은 해당 부처에서조차 소관 행정규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규칙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였으나,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통해 전 부처가 행정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국민부담과 기업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문화도 확산되었다.

일례로 국방부는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후 자발적으로 행정규칙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이후 외교통상부 등 10개 부처에 대한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이 이루어져 규제개혁 문화가 전 부처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력 확보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여부는 결국 소관부처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동안 규제개혁이나 법령정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소관부처가 공익 등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장기검토를 하겠다고 하거나 용역을 거쳐 신중히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행이 흐지부지하게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시 조치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였다.



〈'09. 6. 국무회의 보고장면〉

3 행정규칙 개선사업 성과

● 추진성과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7개 중앙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총 11,577개 중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부 인사·복무 규정 등을 제외한 8,064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하였다.

〈부처별 행정규칙 검토·분석 현황 ('09.12. 기준)〉

소관 부처	행정규칙수		소관 부처	행정규칙수	
	전 체	검토·분석		전 체	검토·분석
국토해양부 (행복청·해경청)	1,868	1,005	기획재정부 (조달청·통계청)	435	344
지식경제부 (중기청·특허청)	1,351	948	국세청	295	195
국방부 (병무청·방사청)	657	530	관세청	484	217
교육과학기술부	371	463	문화재청	156	92
금융위원회	79	106	농림수산식품부	965	666
환경부(기상청)	822	755	농촌진흥청	164	108
보건복지부 (식약청)	704	604	산림청	206	112
외교통상부	140	133	법무부	462	176
통일부	162	75	대검찰청	181	163
여성가족부	42	42	행정안전부	213	131
국가보훈처	132	77	경찰청	253	186
방송통신위원회	256	135	소방방재청	437	241
공정거래위원회	170	95	문화체육관광부	205	144
노동부	367	321	총 계	11,577	8,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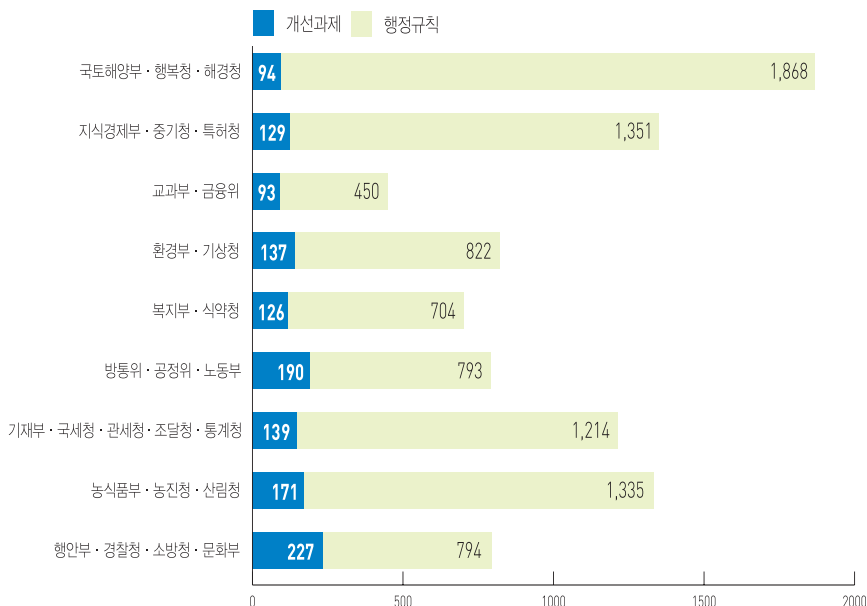
※ 정비완료 11,577개 : 검토·분석 8,064개 + 인사·감사·복무관리규정 등 정비제외 3,513개

-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검토하고 1,68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9차례에 걸쳐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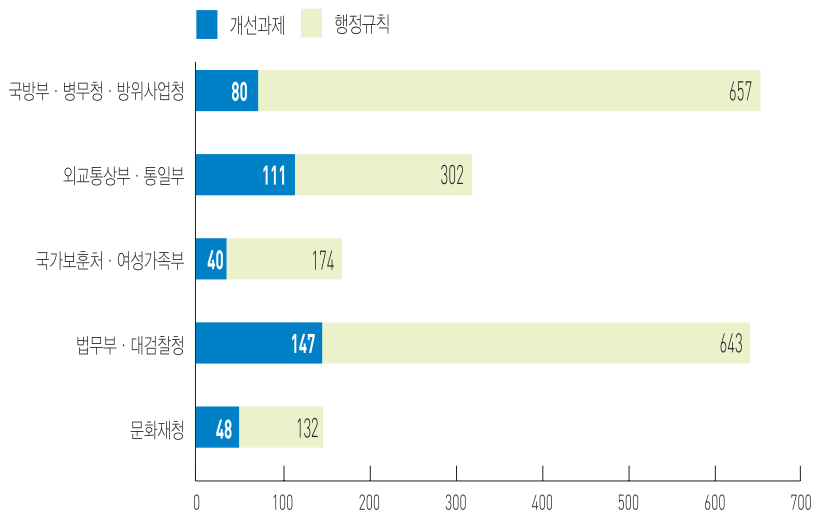
정비대상 기관	국무회의 보고	
	차수	보고일
국토부 · 행복청 · 해경청	1차	'08. 8. 5.
지경부 · 중기청 · 특허청	2차	'08. 11. 11.
교과부 · 금융위	3차	'09. 2. 3.
환경부 · 기상청	4차	'09. 3. 3.
복지부 · 식약청	5차	'09. 5. 6.
방통위 · 공정위 · 노동부	6차	'09. 6. 16.
기재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7차	'09. 8. 4.
농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	8차	'09. 11. 24.
행안부 · 경찰청 · 소방청 · 문화부	9차	'09. 12. 1.

〈 행정규칙 개선과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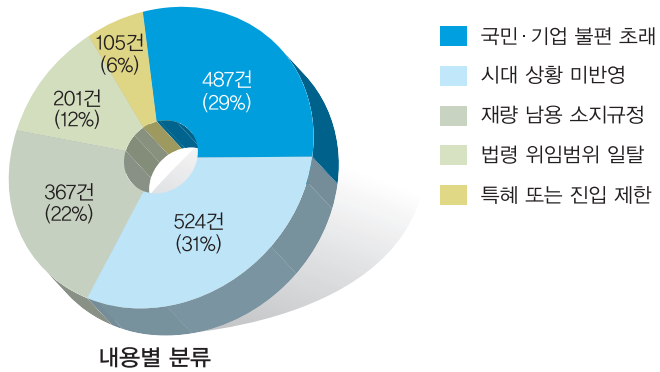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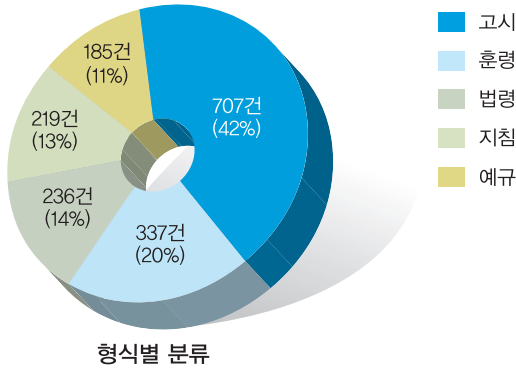
- 한편 소관부처가 행정규칙 개선을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통해 국방부, 법무부 등 총 10개 부처에서 426건의 개선과제가 발굴되었다.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현황 〉



- 전체 1,684개의 개선과제를 행정규칙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고시가 7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훈령 337건, 지침 21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개선과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비현실적 규정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487건,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이 36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선과제의 유형별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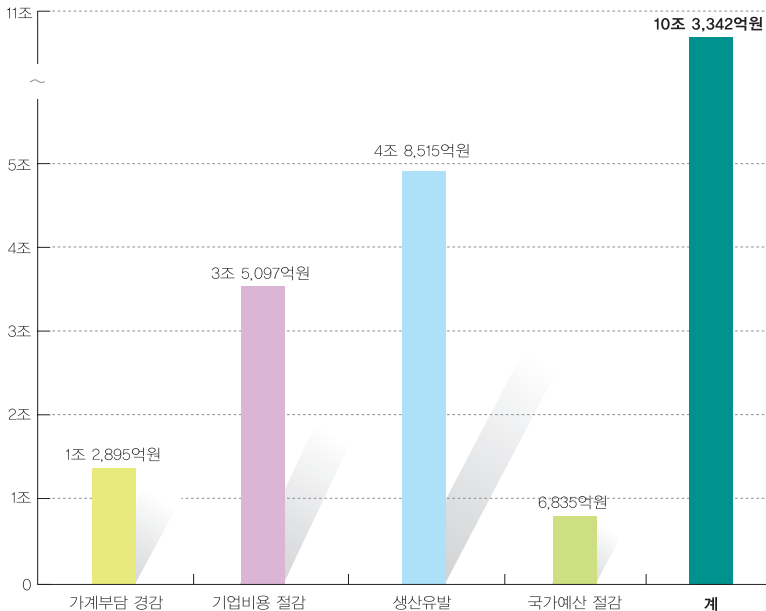


- 행정규칙 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방송, 주요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 및 기획홍보(총 200여 차례 보도)를 하였고, 소관부처, 유관기관(전경련, 무역협회 등 분야별 60여 기관)과 협력하여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였다.

● 개선효과

- 행정규칙 개선 사업은 중앙 부처 소관의 모든 행정규칙을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부 검토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경제적 효과 분석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다.
- 그 결과, 계량화가 가능한 81건의 과제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10조 3,3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규칙 개선담당 직원(총 16명) 1인당 약 6,45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산출



* 비용 추산 방법 : 소관부처, 전문연구기관(산업연구원 등) 자문 등

4 반성 및 향후계획

● 반성 및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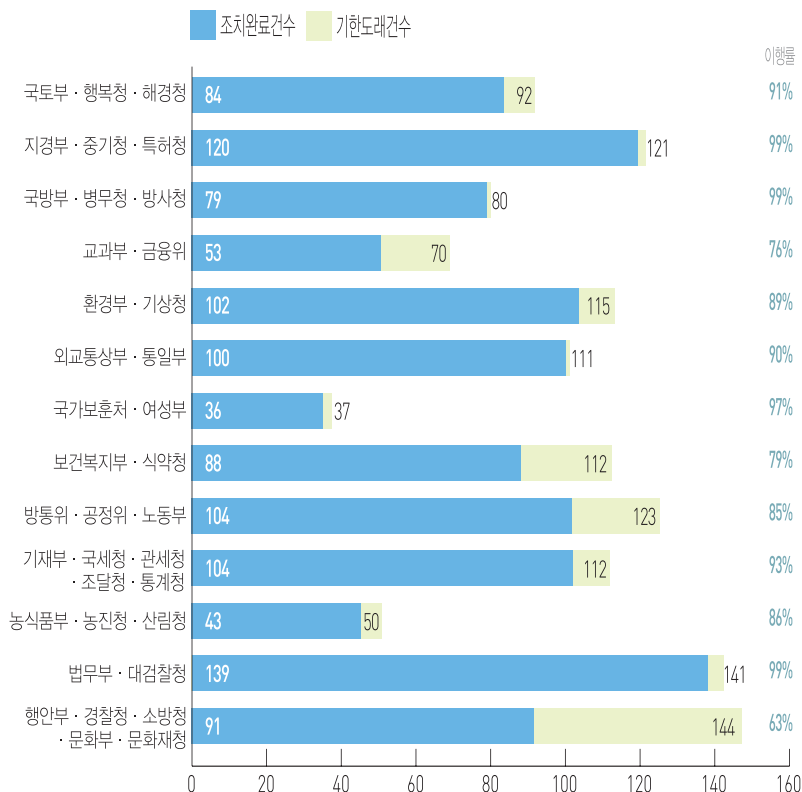
- 행정규칙 개선·정비 사업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9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그러나 19개월이라는 시간은 1만여 개가 넘는 방대한 행정규칙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대략 4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3~4개 부처의 행정규칙을 동시에 검토하여 개선안을 발굴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 또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행정규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지다보니 법령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선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컸다.
- 그리고 각 부처와 협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큰 어려움으로 기억된다. 일단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부처 담당자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개선안에 대한 논리적인 논의보다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완고함과 담당자의 무성의한 대처 때문에 매번 협의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 이외에도 행정규칙 개선·정비 사업이 부처별로 진행되다보니 일단 검토가 끝난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연계된 사안이나 추가적인 개선과제에 대해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었다.

● 향후 계획

•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 점검 및 독려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치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분기별로 이행현황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점검 및 독려는 조치기한이 제일 늦은 개선과제가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규칙 개선과제 부처별 이행현황('10.3.31.현재)〉



- '10년 3월 현재 조치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1,308개 가운데 87%인 1,143개가 이행완료되었다.

• 제·개정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 실시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이 신설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꺼번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 하나하나 애써주시는 국민권의 위원회의 활약에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편안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민현희





기고 <<<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규제 정비해 경제활력 제고

새 정부 들어 종전의 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행정심판위 등 국가 민원 3대 처리기관이 통합돼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봄부터 6개월 동안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945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73.8%인 679건을 처리했다. 또 모든 법률 제정 전에 부패 유발 요인 조항을 걸러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만 신규 제정될 1400여건의 법령을 모니터링해 250여건에 부패유발 요인이 있어 수정토록 개선안을 냈다.

특히 하반기부터 ‘행정규칙’에 들어 있는 숨은 규제들을 걸러내 고치는 중이다. 이 행정규칙이야말로 진짜 세밀히 분석해 정비가 필요했던 규제 조항들이다. 정부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은 예규·지침·훈령·고시(告示)·공고(公告) 등이 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등 법령보다는 하위 개념인 행정규칙은 기관 내부에서 법집행,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 등 행정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산업화·정보화

를 겪으면서 만든 관청 편의적 규정이다. 약 1만 1000여건으로 추산되는 행정규칙에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고쳐지지 않아 비현실적이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문이 적잖이 들어 있다. 과도한 규제나 진입 장벽 같은 기업 활동 장애 요소는 물론,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권익위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령안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해 정비작업에 몰입, 현재 2500여건의 행정규칙을 검토한 끝에 부패의 원천이 되는 규격 조항 300여건을 고쳐 해당 부처에 보낸다.

실례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준 몇가지, 공무원이 운영하는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가 그렇다. 우체국 단말기는 시중은행 단말기 수수료 면제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오후 5시에 마감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 시중은행보다 이용이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다. 따라서

시중은행 단말기와 같은 시간대로 연장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의 면적한도를 묶어와 지방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지방 농공단지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풀었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 층수 제한 완화, 공장 등록에 대한 실태조사 축소,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국민 생활 불편 완화 등도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바꿨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까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에서 시행하는 행정규칙들을 뜯어고쳤다. 내년 2월까지 지는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교육 및 사회 관계 부처의 불합리한 행정규칙 조항들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보건·식품·국방 분야 등으로도 확대함과 동시에 기관 별로 긴밀한 협력 체제 아래 규제 완

환 건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홈페이지(www.acre.go.kr) 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생활불편 정책은 물론 부정부패 문제나 억울한 민원도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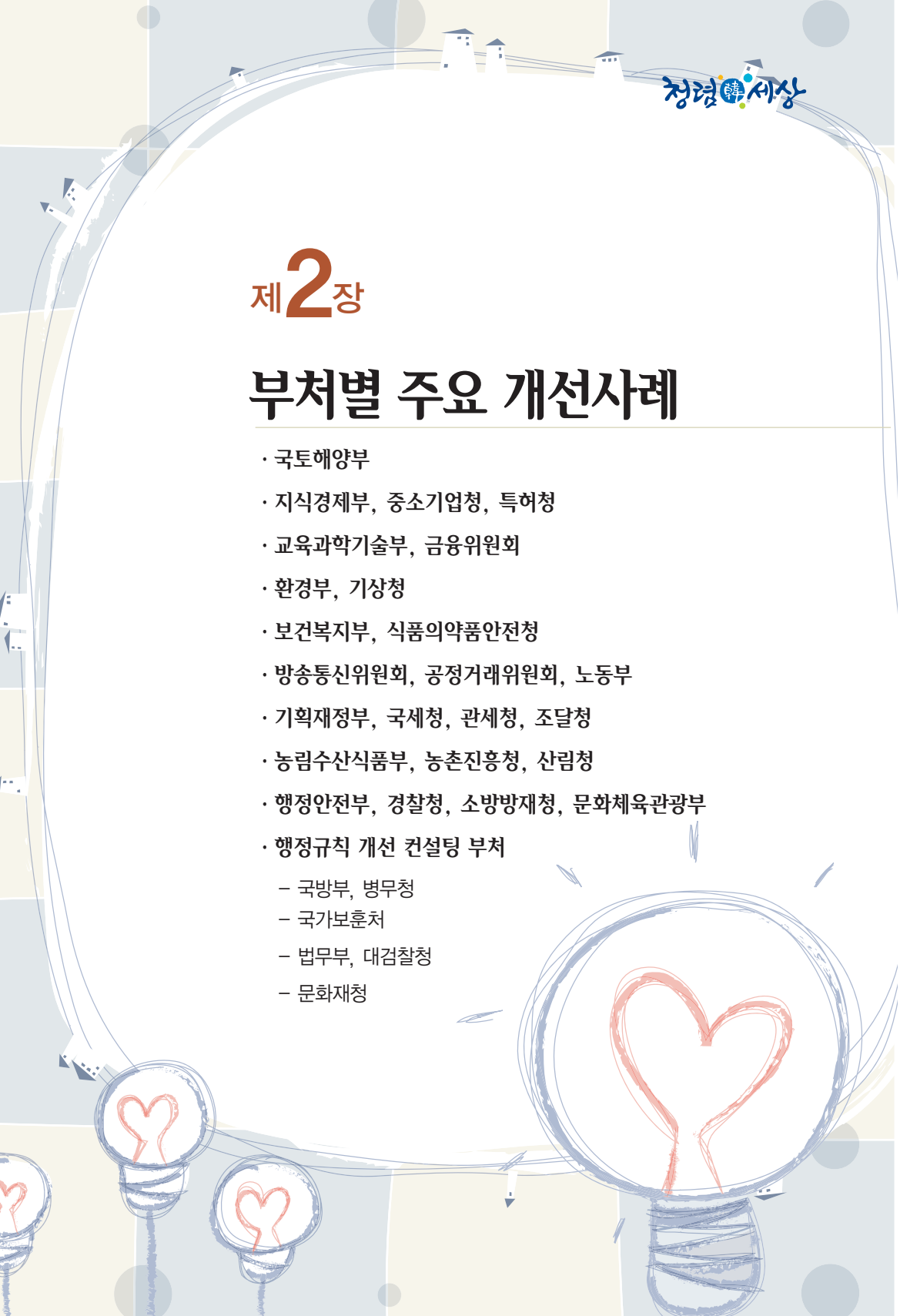
권익위는 국민의 경제 활동과 국가 청렴도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편의적 법령과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상공인들과 외국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금융 애로와 외국인 애로 해소를 위해 별도 협의기구 및 테스트포스팀도 구성중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 조항들을 찾아내 정비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에 공감을 주는 규제 철폐정책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국민도우미(옴부즈맨)'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욱 정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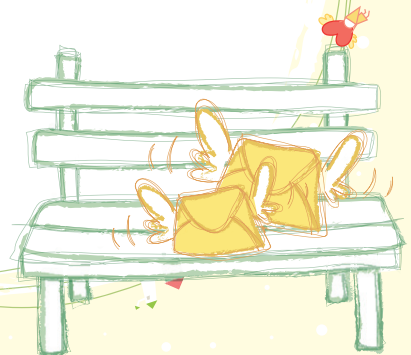
제2장

부처별 주요 개선사례

- 국토해양부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 환경부, 기상청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부처
 - － 국방부, 병무청
 - － 국가보훈처
 - － 법무부, 대검찰청
 - －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역적 특성 살리기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 대형 유통단지 조성을 계획한 ○○시, 하지만 일률적으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제를 문제 삼아 대부분의 업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이런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의견을 개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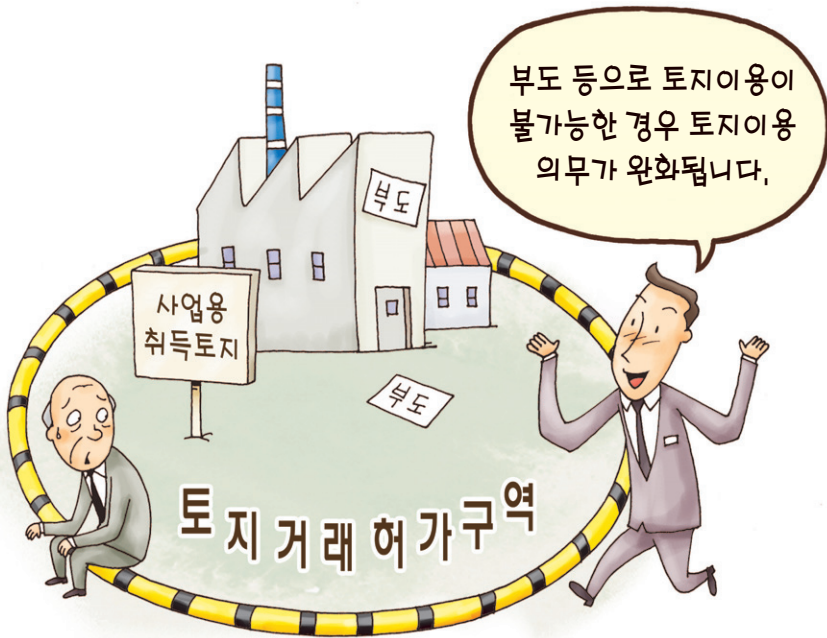


🍌 이렇게 해결했어요!

“4~7층으로 제한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역적 특성과 정비목적에 맞는 다양한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토지를 팔 수 없다니요?”

금융기관을 통해 1차 부도 통지를 받은 L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업용 취득 토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아직 의무이용기간 중이어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도외시하는 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해왔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금융기관이 확인한 사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용 취득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가 완화돼 기업의 불편이 크게 해소됩니다.” 🌱

“유명무실한 선박 신호포판, 꼭 유지해야 하나”

어업이 생업인 강릉의 K씨, 과거 70년대 대남간첩선과 우리 어선을 구별하기 위해 생긴 선박의 신분증격인 선박 신호포판을 매번 입·출항시 해경 신고서 또는 통제소에서 수령, 반납하는 절차가 출어시간을 지연하고 실제로도 유명무실하다며 개선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해왔다.



🍌 이렇게 해결했어요!

“선박 신호포판이 폐지되고 대신 전자식별카드 장착(서해 및 접경지역 선박) 및 해경의 정밀 검문·검색이 강화돼 바다의 안보를 빈틈없이 지켜 나갑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용도지역 변경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여만 가능토록 제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이로 인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도 제한됨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선안 및 효과

- 300호 또는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취락으로서 기존 시가지가 정비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

선원 승·하선시 신고절차 다양화

선주 등이 매년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선원 승·하선 신고절차를 팩스·인터넷 등의 간편한 신고방법
으로 다양화

※ 「선원법 시행규칙」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직접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승무원 명부를 제출하고 공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선원의 질병 등 긴급한 사정으로 교체 승선하는 경우 매년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공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출항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음
- 특히, 연근해 어선은 입·출항이 잦고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빈번하기 때문에 입·출항하는 항·포구가 지방해양항만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인 신청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막대함

개선안 및 효과

- 선주 등이 매년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선원 승·하선 신고절차에 팩스·인터넷 등 간편한 신고방법을 도입하여 기업부담을 감소시킴

여객선의 선박 연령(선령) 제한 완화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하고, 1년 단위로만 되어 있는 선령 연장기준도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해운법 시행규칙」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15년 이상된 내항화물선은 운항할 수 없으며, 매년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운항을 연장할 수 있음
- 획일적인 선령제한으로 인해 선령 제한에 도달한 선박은 그 상태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함
- 또한, 선령 연장을 위한 검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여객선사는 선령 20년 경과 시점에 배를 해외에 매각하고 있으나,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국부가 과다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20년인 여객선의 선박 연령 제한을 완화(예 : 30년)하고, 획일적인 선령 연장기준(1년 단위)도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예 : 1~3년 단위)
- 연 200억원의 기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요건의 개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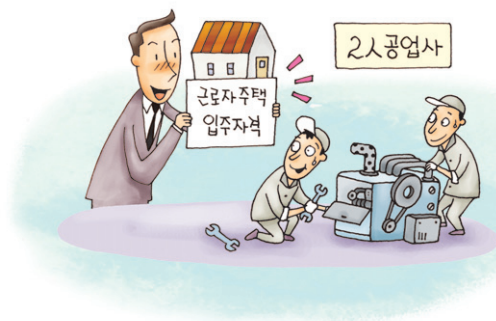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하나로 ‘5인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주택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입주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안 및 효과

-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하여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해양심층수 표시제품의 심층수 사용방식 명시

해양심층수 표시마크 부착제품에 해양심층수가 사용된 방식(제품원료로 첨가, 응고·발효 등 제조과정에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해양심층수 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성분함량 등의 표시기준은 없는 상태임
- 따라서 몇몇 제품들은 극히 미미한 해양심층수를 사용(A소주의 경우 병당 함유량이 0.001875g, B두부의 경우 0.5%에 불과함)하고도 해양심층수 마크를 넣어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오해 또는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해양심층수 표시마크 부착제품에 해양심층수가 사용된 방식(제품원료로 첨가, 응고·발효 등 제조과정에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규제개혁 성패는 국민 공감에 달려

원유 및 원자
재 가격 급등으
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성
장률 둔화와 일
자리 감소가 이

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
민과 중산층이 부담해야 하는 고통
도 함께 증가하는 게 안타깝지만 현
실이다.

정부는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서
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을 개발하고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그
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국민생
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에 장
애가 되는 규제는 정부에도 명예롭지
않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
는 국정과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밀접한 업무를 담
당하다 보니 그동안 '규제과다 부처'
로 인식되어 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
후 이제는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토지 교통 항만

기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해양 등의 규제
를 글로벌 스탠
더드에 맞지 않
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씩
 뜯어고치고 있

다. 최대 4년까지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월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 특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수요자의 체감
도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서민과 중
산층, 기업이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
하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 거시
적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는 일
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안이라도 수
요자들이 직접 느끼고 감동해야 더 큰
추진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
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확정한
'국토해양부 행정규칙 개선과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훈령 지침 등으로 지칭되는 '행정
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과는 달
리 원칙적으로 규제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행정규칙'은 공무원의 일처리
방식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규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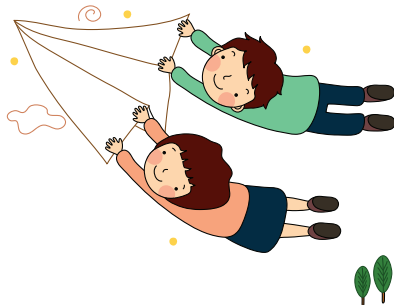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행정규칙'에 걸어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직·간접적인 규제가 스며 있는 것이 우리 행정 현실이기도 하다.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만 1005개 행정규칙이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94건에 이르는데 '숨은 규제'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비한 결과물이다. 특히 내용이 비현실적이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규제가 과도하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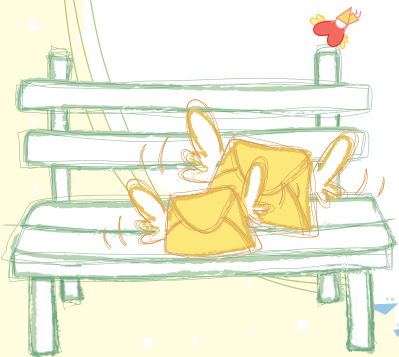
이에 따라 8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업무·상업시설을 지을 때 7층 이상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돼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4년)이 완화되고, 12월부터는 근로자주택의 입주자 격도 종전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130만명에 달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거창한 제도개혁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다. 정부와 공무원이 진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느냐에 규제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공장 시급한 회사, 착공 더딘 공장부지 보면 안타까워”

공장부지가 시급한 A회사, 산업단지 등에서 공장 부지를 받고도 착공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불법 임대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현 공장부지 착공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수요 업체들의 긴박한 사정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이렇게 해결했어요!

“공장 착공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루는 부지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져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공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공장부지 내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차장 등 공장 여유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주차장 및 유희부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이를 위반시 공장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공장부지내 주차장 등 여유부지 활용도가 떨어짐

-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공장부지 안의 주차장 및 유희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어 기업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향후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큼

개선안 및 효과

- 공장부지의 본래 용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및 유희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지식경제부

독점적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다양화

정보통신기술협회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Good Software) 기관을 확대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 Good Software)이란 일정수준 이상인 소프트웨어에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GS 인증제품에는 정부조달 우선구매, 무담보 신용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현재까지('01년 ~ '08.9월)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약 900여개

- GS 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독점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GS 인증 대기기간은 '07년 평균 약 4개월로 이에 따라 '08년 상반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30여명의 심사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인증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

- 앞으로 GS인증과 산업용소프트웨어 인증제인 ES(Excellent Software) 인증이 통합될 예정이어서 인증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증기관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확대
-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대기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농공단지 면적이 시·군·구별로 최대 166만 m^2 로 제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만 m^2 까지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면적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행정규칙에서는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시·군·구별로 166만 m^2 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입지조건의 개선, 공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지정이 필요함에도 농공단지를 더 이상 조성하지 못하여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법령의 범위(200만 m^2) 내에서 입지수요의 증가 등 자체 실정을 고려,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 여의도 면적(8.5 km^2)의 약 5배(41.5 km^2)에 달하는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생산유발효과 연간 6,090억원)



지식경제부

우체국 금융수수료 관련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변경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 영업시간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평일 17시에서 18시, 토요일 13시 30분에서 14시까지로 변경

※ 「우체국금융수수료」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우체국은 우체국자동화기기(CD/ATM) 영업시간을 평일 08:30~17:00, 토요일 08:30~13:30으로 정하고 있음

※ 반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의 CD/ATM 영업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4:00

- 따라서 우체국 CD/ATM 영업시간이 일반은행보다 일찍 종료되어 CD/ATM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국민불편이 초래됨

ex) 17:30에 은행 CD/ATM을 이용하면 영업시간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나, 우체국 CD/ATM을 이용하면 영업시간 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부담

개선안 및 효과

- 우체국의 CD/ATM 영업시간을 평일 18:00, 토요일 14:00까지로 연장
- 연 9억 원의 수수료 비용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됨



전자화문서로 이관(스캐닝)한 원본종이문서의 보존의무 폐지

전자화문서로 이관한 원본 종이문서의 보존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존의무 폐지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3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원본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이관한 후에도 종이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함
-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보관이라는 이중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전자화문서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 보관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해소
- 지식경제부가 전자화문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실시한 용역에서도, 종이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대체할 경우 유통비용(7,700억원)과 보관비용(1,600억원)을 합쳐 연간 약 9,3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6)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중복요인 제거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간 평가방법 등 중복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는 대상기업과 기술평가방법이 상당부분 중첩됨
 - ※ '08년 7월 현재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은 총 2만 7,666개이며, 이중 6,884개사가 중복 인증을 받은 기업임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중으로 준비해야 하고, 확인준비·인증심사비도 이중으로 지출되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함
 - ※ 과도한 서류제출 부담으로 인해 서류 준비를 대행해 주는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 지출(대행비 약 200~500만원)

개선안 및 효과

-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간 중복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인증심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
 - ※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예상액 : 약 482천만원(누적 중복인증 기업수×이노비즈 인증심사비)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업무 일원화

중소기업협동조합(약 900개)의 업종을 주관하는 각 주무부처 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조합설립 인가,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중소기업 설립인가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인가신청 기관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별 담당자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업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립인가 사항을 부당하게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소관업무에 부가된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여 조합설립인가 민원을 타 부처로 이첩하는 등 조합설립 인가에 장시간이 소요됨

※ 한국청소경비구역 협동조합 설립인가('02.10.~'03.2.)

노동부(신청) → 보건복지부 → 경찰청 → 구)건교부 → 중기청(처리)

개선안 및 효과

-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현재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
기간을 최소 지급 가능기간인 '7일 이내'로 단축

※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제6조

개선완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은 창업투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비 분담금을 창업 중소기업에게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창업투자 보조금이긴요한 창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나, 지급 기간이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또한 국가의 분담금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언제 지급받을지가 불명확하고 국가의 분담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개선안 및 효과

- 창업 중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및 국가의 보조금 지급기간을 최소 지급가능기간(예 : 7일 이내)으로 단축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신청대상 확대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1만불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제한된
신청대상에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등도 포함

※ 「2008년도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시행계획」 II.가.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이란 중소기업청이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 2008년도 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사업예산은 47억원이며, 280명 내외를 6개월(기본)간 56여 개국 85개 지역에 파견

- 제조업(IT관련 서비스 포함)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 1만불 이상인 기업’, ‘이노비즈 기업 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 1만 불 이상인 기업’ 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초보기업의 사업 참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신청대상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까지 확대
- 약 24만여 사업자가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추가신청 가능

특허청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용자 확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설립취지를 고려, 학생이 아닌 만 19세 미만인 자도 특허상담센터 이용대상에 포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 제7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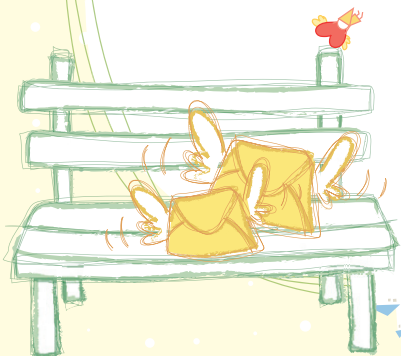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제도 : 일반 대리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맞지 않아 대리인의 선임 없이 민원인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 공익변리사는 민원인의 출원이나 출원 계속 중에 발생한 사건 및 등록 후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의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 스스로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조력자 입장으로 사건을 다룸

-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자이면서 학생이 아닌 경우는 특허료 등의 면제대상은 되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은 받을 수 없어 형평에 맞지 않고 경제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특허상담제도의 취지에도 반함

개선안 및 효과

- 만 19세 미만이면서 학생이 아닌 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대상에 포함하여 서류작성 등 공익변리사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도 대출한도에서 제외돼야”

지방의 소상공인 S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신탁에 대출을 의뢰하려 했으나 대출한도를 넘어선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이 보증하는 대출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은 왜 대출한도에 포함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보증한 대출도 신용협동조합 대출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신용협동조합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기한 연장

신용협동조합이 채무변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경매 유찰 및 보류 등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을 경우, 매각처분 기한을 1년간 연장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함
-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는 경영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되어야 하나
 - 채무 변제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공매 가능상태를 분석·확인하는 기간이 물건에 따라 길게는 1~2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공매(경매) 유찰 및 보류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1년에 한하여 매각처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부담 경감

국립중앙과학관 관람시간 개선

타 박물관에 비해 관람시간이 짧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 확대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관람규칙」 제2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국립 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이 하절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동절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타 박물관 등에 비해 관람시간이 짧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

※ 국립박물관 관람시간

화, 목,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수,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7시

개선안 및 효과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시간을 국립박물관 관람시간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관람 시간	· 하절기 : 9시30분~17시30분 · 동절기 : 9시30분~16시30분	· 9시~18시

- 국민편익 증진(연 이용자 약 280만명)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

유치원·사립초교, 중·고교 수업료 납부방식을 법률의 위임취지에 맞게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학교별 사정에 따라 분기별·월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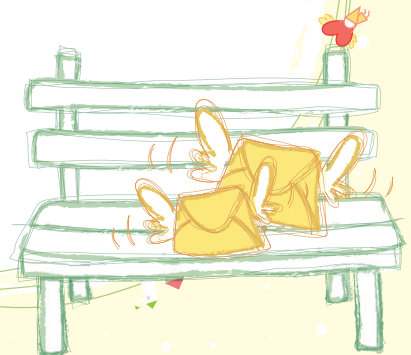
- 사립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월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은 수업료 납부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사립 유치원 수업료 (1분기) 평균 : 100만원
 - ※ 어린이집 보육료 : 월납(2008년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선안 및 효과

- 초·중등교육법 제 10조(수업료 등)에 따라 공립 및 사립학교에 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기별 또는 월별 징수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제고



환경부
기상청



“상수원 수질 중요하듯 우리 삶의 질도 중요해”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 살고 있는 T씨, 오래된 농가주택을 개축하고자 여러 차례 해당 관청의 문을 두드렸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주택을 크게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행위마저 제한하는 것은 해당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 이렇게 해결했어요!

“별도의 입지제한이 없고 건축연면적이 동일 또는 감소하는 경우,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개축이 허용돼 재산권 행사가 기존에 비해 쉬워집니다.”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등급 개선

등급이 2개(최우수·우수)로만 분류되어 건축물 간 성능구분의 의미가 적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증획득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친환경건축물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현실화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별표8

진행중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건축물이란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 보전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설계·시공·운영되는 건축물로
 -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일반건축물에 비해 용적률을 10% 상향할 수 있고, 취·등록세와 지방세도 최대 20%까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
-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건대 사업자가 평가기준을 충족시켜 85점 이상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65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최우수 등급(85점 이상), 우수등급(65점 이상)

● 개선안 및 효과

- 인증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완화
 - A등급 : 90점 이상, B등급 : 80점 이상
 - C등급 : 70점 이상, D등급 : 60점 이상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개선

주민지원협의회 추천에 의한 위촉 및 의결에 의한 해촉은 절차가 불투명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9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주민감시요원은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되며,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해촉될 수 있음
-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직·간접 영향권 8개 지역에서 총 15명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되고 있지만 지역별 협의회 위원의 추천권 행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발생이 우려됨

개선안 및 효과

- 현행 감시요원에 대한 지역별 배정에 의한 협의회 추천 방식을 철폐하고, 주민감시요원 전체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지원협의회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하도록 개선
- 지원협의체가 의결하여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협의체의 해촉 의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부당한 해촉 및 후임자 위촉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또한, 해촉을 통보받은 주민감시요원에게 해촉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

환경부

금속가구의 친환경제품 인증대상 포함

목재가구 못지않게 환경오염이 적고 재활용성이 뛰어난 금속가구도 친환경제품 인증대상에 포함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관」 별표1,2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금속가구는 목재가구 못지 않게 친환경적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 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 목재가구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금속가구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금속제 가구에 대한 친환경제품 대상군 선정 및 인증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개선안 및 효과

- 금속가구에 대한 친환경제품 인증기준 마련 및 인증 실시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연 400억원의 매출신장이 기대됨

사실 국민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지배하는 것은 어찌보면 법령이라기 보다는 행정규칙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자영업을 하다보면 이래 저래 관공서를 많이 찾게 되는데, 공무원들 찾아가면 늘 이런저런 규칙때문에 공무원분들도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김윤경

경영악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결손처분 적용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처리 간소화

※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9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내에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납부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징수유예규정을 신설하여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기업의 비용부담이 약 30억원의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제조일과 유통기한 만료일을 병행 표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4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먹는샘물 업체별로 유통일자 표시를 유통기한 만료일 또는 제조일자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유통기한 만료일을 제조일자로 오인하여 제품을 음용하거나 반대로 제조일자를 유통기한 만료일로 착각하여 제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안 및 효과

- 유통기한을 원칙적으로 제조일로 표기(00년 00월 00일 제조) 또는 제조일부터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표기(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하도록 개선함
-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 오해요인을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



2008년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결정 방법 개선

기상정보 이용요금에 대해 기상청과 항공사가 ‘상호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은 협의 지연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협의 대상을 법령과 같이 일원화

※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부칙2

진행중

● 현황 및 문제점

- 항공기상대가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원가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항공사에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대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공항에 착륙 또는 통과비행하는 경우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법령에서는 기상청장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 후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규칙(고시)에는 항공사측과 협의 및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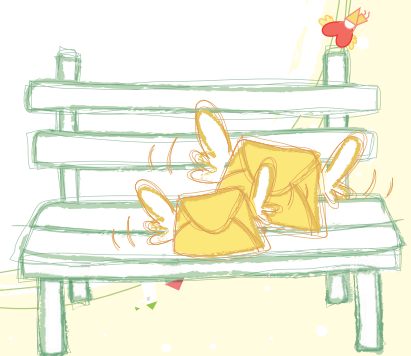
-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항공사를 행정규칙에서 협의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추가하고 있고,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 결정이라는 표현도 불명확하여 협의 시 혼선의 여지가 있음

※ 2008년 기상청과 항공사와의 협의과정 조사결과, 3차례 협의에서 의견차이가 커 지기만 하여 사용료를 정하지 못한 채 1년 소요

● 개선안 및 효과

- 항공사와의 협의 부분에서 ‘상호수용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휴일 당번약국 찾기 너무 어려워”

휴일에 친척집을 찾은 S씨,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위해 당번 약국을 찾았으나 어딘지 알 수 없었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당번 약국이라는 곳을 물어 겨우 찾아갔지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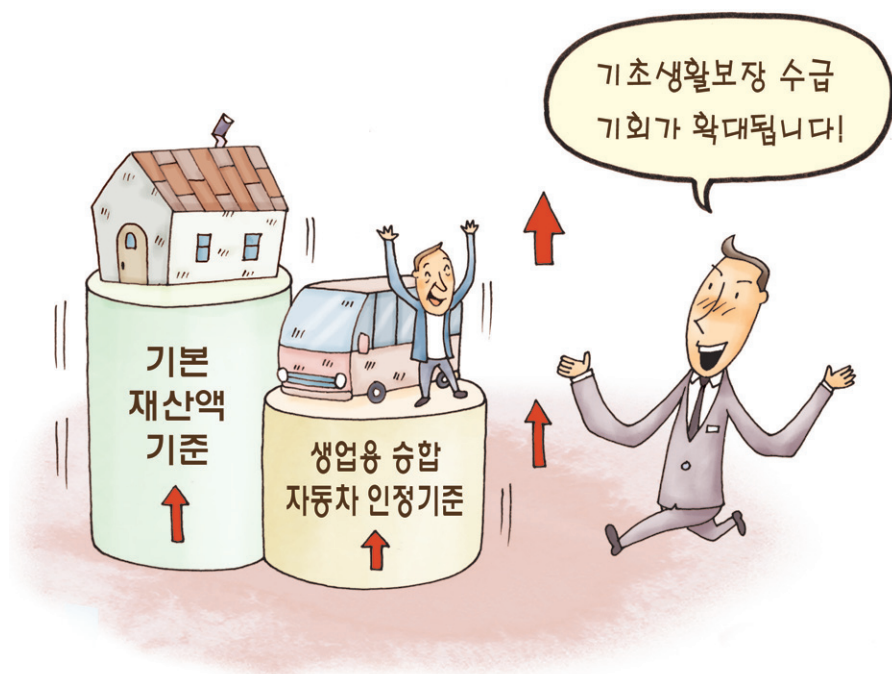


 이렇게 해결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당번약국제의 지정과 운영이 의무화되고 1339 · 129 · 인터넷 등을 통해 당번약국 안내 및 검색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지하 셋방에 살며 10인승 봉고차로 가족의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M씨,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전세가와 봉고차만으로도 수급자 선정 재산가액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며 거절당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M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 이렇게 해결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본재산액이 상향조정되고 생업용 승합자동차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회 또한 크게 늘어납니다.” 🌈

“희귀병 앓고 있는 우리 아이, 약이라도 먹일 수 있었으면”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세 여아를 둔 W씨, 딸아이의 질병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약을 접했지만 희귀의약품이 아니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절망, 매달 2백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구할 수 없어 그저 딸아이의 투병을 지켜 보고만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조정돼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국내 환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용 중인 의료기기 일부에 대한 성능개선 허용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개선이 허용되지 않아 기기 전체를 교체했던 것을 일부교체(변조, 개조)도 허용

※ 「의료기기법」 제24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변조·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기기의 일부기능 개선인 경우에도 기기전체를 교체해야 함
- 이는 의료기기 오작동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외화낭비 등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를 발생시킴

개선안 및 효과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의 의료기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된 일부 부품의 업그레이드를 허용
- 연간 약 1조 1천억원 자원절감 효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약 6만대
('08.3 기준)



의료인 리베이트 취득행위 처벌 명확화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가 모호하므로 명확한 제재규정(면허자격 정지 등) 신설

※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의료인이 불필요하게 해당 제약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함
 - * 리베이트 수수행태 : 현금지급, 골프접대 등 직접적인 취득 외에 제품설명회·세미나·학회 등을 통한 지원, 시판 후 조사명목의 지원, 영향력 있는 의사들에게 평상시 고문료 지급 등 다양한 방식 만연
-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적시해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그 처벌근거가 되는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당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
 - * 의료법령에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 규정이 있으나, 리베이트 취득에 대한 직접적 제재근거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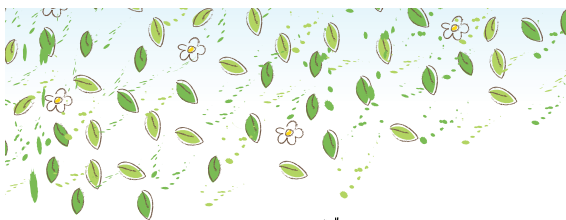
개선안 및 효과

-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 사용조건으로 금전·향응 등을 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조항을 명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경쟁 유도
-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 : 연간 약 4,2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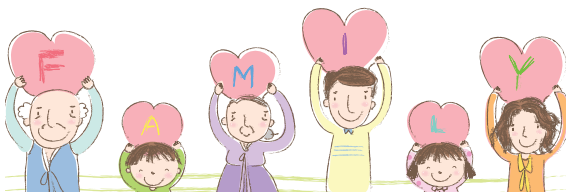
국민이 건강해져야 나라도 행복해져요!

조영임(30, 직장인)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국과 특정 제약회사가 서로 계획 하에 약품을 유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건강은 나 몰라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것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 함께 웃으면 행복해져요 ♡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건강검진비를 부당청구한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가 검진비용 환수에 국한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청구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 해당 검진기관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개선완료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시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검진비 부당청구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 건강검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는 검진비용 환수에 국한

- 검진비 부당청구 문제는 고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의료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임

● 개선안 및 효과

- 건강검진기본법령의 시행에 따라 건강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청구한 경우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건강검진비용의 부당청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 기대



식약청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대상 확대

‘GMO 원료를 원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으로 확대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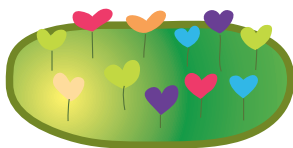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표시 대상은 GMO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유전자재조합식품 :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식품이라고 함.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간 섭취할 경우, GMO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위험도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GMO 표시를 확대(일부 식품 →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주류)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제도 전면실시

5개 특정성분(효소, 토코페롤 등)을 함유한 화장품에만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함유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

※「화장품법」 제10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화장품은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해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어 왔으며, 소비자들은 변질된 화장품에 쉽게 노출되어 피부 부작용(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개선안 및 효과

-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종전에는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했으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함)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함
- * 일본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되었고, EU국가들은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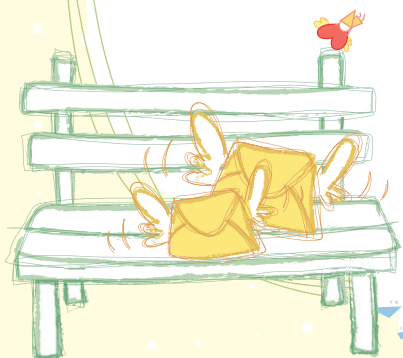
‘화장품 유통기한 표기’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강정미(34. 주부)

최근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기사를 듣고 ‘왜, 진작 시행되지 않았나’ 하는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기 전용 화장품을 구입하여 아이에게 발라줬는데 아이얼굴에 붉은 반점이 올라왔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이 화장품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품 유통기한 표기뿐 아니라 식품과 같이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행정규칙들을 더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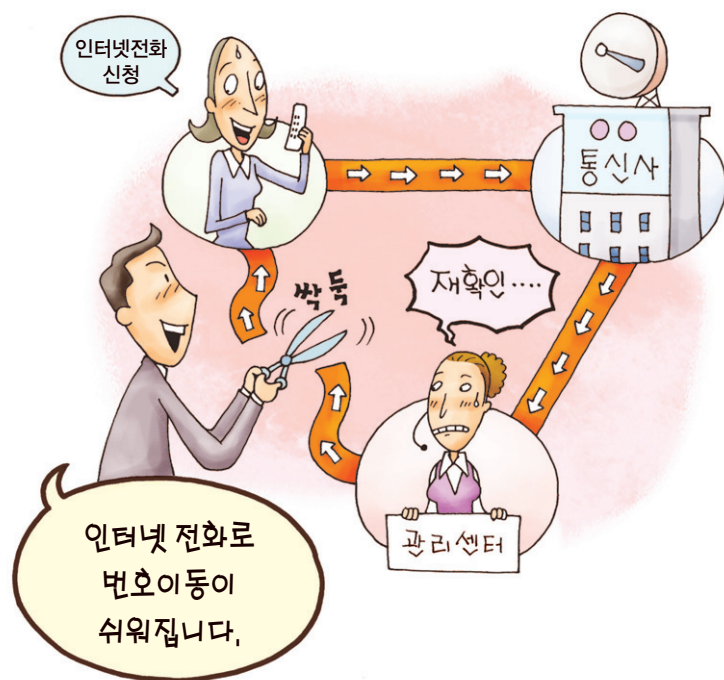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인터넷전화 가입 확인 절차, 개통 지연시켜”

인터넷전화를 신청한 P씨, 하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는 바람에 가입여부 진위를 묻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해 며칠이 지나도록 인터넷전화가 개설되지 않았다. 인터넷전화는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설치하는데 굳이 전화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 번거로웠던 전화확인 절차가 없어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번호이동이 이뤄집니다.”

전국대표번호 번호이동대상 추가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는 080 착신자 과금서비스와 동일한 지능망 서비스임에도 번호이동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전화번호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이동전화서비스,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만 해당되며 전국대표번호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러나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080 착신자 과금서비스와 동일한 지능망 서비스로, 기술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번호이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편이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07년 현재 약 2,000억원의 시장으로 추산되고 있는 매우 큰 유선전화 시장으로, 사업자간 경쟁활성화 및 가입자 후생등을 위해서라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대상에 포함시켜 경쟁 활성화
- 연간 약 300억원의 통신비절감 효과가 기대됨

선박국용 레이더 기술기준 개선

PON 전파 형식의 기술기준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선박국용 레이더의 기술기준을 다양한 전파 형식(FMCW 등)의 기술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무선설비규칙」 제54조

개선 완료

● 현황 및 문제점

- 무선향행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의 기술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PON전파형식으로 2.92GHz 이상 3.1GHz 이하 및 9.32GHz 이상 9.5GHz 이하의 주파수만 사용할 수 있음

* PON : 펄스파 레이더로써 짧은시간 동안 계속되는 전파를 말하며, 일본브랜드(JRC 등)가 80~90% 점유하고 있음

- 다양한 전파형식을 레이더에 접목시킴에 따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파형식의 레이더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은 1940년대에 개발된 펄스파 레이더(PON 전파형식)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전파형식 레이더의 시장접근이 어려움

● 개선안 및 효과

- PON 전파형식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약 2,700억원 국내생산유발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됨

안테나에 피뢰기 및 접지 설치 의무 완화

현행 피뢰기에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무선설비규칙」 제19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사업자에게 피뢰기 및 접지장치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이미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 접지장치 : 설비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이어 놓기 위한 장치.

- 이미 건물 자체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주가 미관상의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피뢰침과 개별 접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피뢰기에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을 사업자가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연간 약 5,000개의 무선국이 혜택

※ KT, SK텔레콤, LG텔레콤, KT파워텔 등의 사업자가 연간 약 25,000개의 무선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00국이 해당

간접광고의 제한적 허용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원마련 및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PPL(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광고 허용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개선완료

● 현황 및 문제점

- 간접광고(PPL)란, TV 드라마 등 콘텐츠 속에 기업의 제품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말함
- 그러나 PPL, 협찬, 가상광고 간의 개념 및 경계가 모호해 간접광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광고를 통한 재원조달과 투자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안 및 효과

- 간접광고(PPL)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에 대한 재원조달 및 투자기회 제공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개선

무선통신 및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식만으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기사 4급 자격증 신설

※ 「전파법 시행령」 별표17

진행 중

현황 및 문제점

-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으로 현재 제1급, 제2급, 제3급(전신급) 및 제3급(전화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마추어무선은 자발적인 취미활동이지만 무선통신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일정한 기준의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한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급수를 신설
- 아마추어무선인이 연간 15,000명 이상 증가 예상
- 연간 400억원 이상의 관련산업(고정국, 이동국, 휴대국 및 주변장치) 매출 창출 기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 항목에 대한 평가척도 개선

방송평가시, 각 방송사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개선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평가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각 방송사업자별 평가 척도에 따라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또는 개편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가 미흡한 면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 중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선하여 시청자 권익보호에 충실화를 기함

“벌써 세 번째, 인터넷 구입 물품 도착 안 해”

평소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여대생 O씨, 주로 5~10만 원대의 화장품이나 의류, 책 등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입하는데 종종 구입한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땐 어디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척 답답해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구매안전서비스제도의 적용범위가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소액거래의 안전구매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편의점 폐업시 재고물품 반납 안 되는 건 횡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 폐업을 결정하고 가맹본부에 재고 물품의 반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재고 부담을 그대로 떠안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며 억울함을 호소,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를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앞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중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부담 항목에 ‘재고물품 등의 처리방안’을 명시, 이로 인한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동영상물 보존의무 완화

소비자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온라인 거래 동영상물 표시·광고는 대용량이어서 현실적으로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보존의무를 삭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진행 중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는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의 불만을 제기할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1일 거래량이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전산 서버용량 과다 점유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6개월 간의 보존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동영상 유지비용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실정임

개선안 및 효과

- 표시·광고 기록의 보존 의무를 면제하되, 소비자 분쟁 발생시 광고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지도록 함
- 연간 약 500억원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보존유지 비용 절감

경품제한 기준 폐지

모든 유통업에 경품제한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의 맞춤형 판매 및 유통매체별 마케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 경품관련 규제를 폐지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자가 상품·용역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제공 행위에 해당됨(단, 5,000원 이하는 허용)
-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맞는 맞춤형 판매촉진 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어 창의적인 기업마케팅 전략 개발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경품관련 규제가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유통매체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후생 증진,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경품고시 상의 소비자경품 관련 규제를 폐지
- 유통시장의 매출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5,590억원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온라인 신고방법으로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고 과도한 신고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신고, 신고사항 변경, 영업의 휴지, 폐지 및 재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 통신판매는 온라인 특성상 사업 개시나 아이템 변경 등이 자유로운데, 그때마다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시간낭비 등 통신판매업자의 불편을 초래함
- 또한 신고비용(45,000원)도 방문판매업 신고비용(27,0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통신판매업 신고방식을 현재의 오프라인 신고방식에서 온라인 신고방식으로 개선하여 신고절차 간소화 및 신고기간을 단축
-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세 감소를 통해 신고비용 적정화

업종별 중요정보 표시·광고에 상조업종 추가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종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환급시기 등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IV.업종별 중요정보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는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임
- 그러나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분야는 중요정보 고시가 필요한 표시·광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조업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주로 상조업 대리인의 주선으로 인한 책임관계 모호, 계약내용 이행의 문제,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중요정보 표시가 반드시 필요함

개선안 및 효과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업종별 중요정보'에 상조업종 추가
 - 중도해약환급금액에 대한 환급기준, 환급시기, 서비스내용 등을 표시·광고 의무화
- 중요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선택권 보장 및 상조서비스 피해 차단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조건인 미취업기간 “3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II. 1-3.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를 인턴직원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 간 매월 50 ~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홍보부족, 참여 대상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 태임

※ '09.5.7. 현재 인턴 채용 인원은 8,398명으로 목표치 2만5000명의 33.6%에 불과

- 특히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실업자는 인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인턴제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로 바꿔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노동부

신규고용 촉진업무 수행기관 확대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도모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가.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는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급증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기관과 취업지원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또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이들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15만원 ~ 60만원, 이하 “장려금”이라고 함)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 구인기업이 위탁기관을 통한 채용을 기피하면서 민간위탁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

국외취업 연예인 소양교육제도 폐지

한류열풍 등으로 연예인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외 취업연예인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현지교육 수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폐지

※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 제23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이 국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과 현지적응에 필요한 소양교육(경제·질병교육, 법규·관습·국위선양 및 품위유지 등) 4시간 이상과 현지교육(현지사정과 적응요령 등) 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이 규정은 1995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한류열풍'으로 국내 연예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수강의무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적절치 않은 제도임

※ 외교통상부(당시 외무부)는 1992년 6월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 전면 폐지

개선안 및 효과

- 최근 연예인들의 활발한 해외진출, 국제화·개방화 시대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소양교육 및 현지교육 제도를 폐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대상 선정기준 개선

임신·출산·상해 등의 사유로 타 훈련과정 수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 실시 규정」 제4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까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훈련 중 수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업을 완료한 것으로 봄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 한도(200만원)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그러나 임신, 출산, 상해 등 수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업을 포기한 경우에도 1회 수업을 완료한 것이 되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측면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임신, 출산, 상해 등 수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 수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 완료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훈련 기회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대상 기준 완화

영세자영업자의 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제1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범위를 정해 고시하고 있음

*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

- 경제위기로 인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에 대한 훈련대상 요건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훈련대상자가 적음

개선안 및 효과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

* '08년 훈련참여자(2,228명)대비 1,20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비현실적 기업규제 개선에 나선 국민권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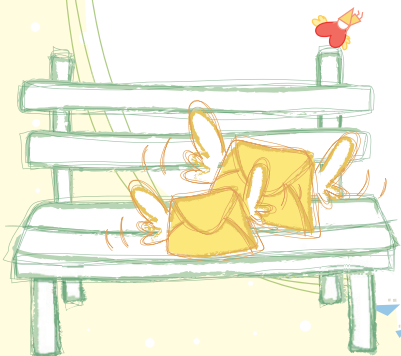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對)기업 행정규제의 개선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는 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2월말 출범의 목적 그 자체였음을 되돌아보며, 위원회가 19일 검토 및 개선대상으로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 3개 기관 소관의 고시·훈령·예규·공고 등 1,069건을 우선 특정한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가 개선 대상 선별의 기준으로 비현실적 내용, 과도한 규제 및 진입 장벽,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 등으로 유형화한 취지는 비단 3개 부처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유의해야 할 기업규제 개선 방향의 일관원칙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은 법률, 대통령령의 하위규범이다. 행정규칙의 이같은 계서(階序)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체감 영향력의 역순(逆順)에 가깝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치이다. 정부 부처 임

의로 만들어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고, 더러는 입법 취지까지 넘어 기업 경영의 신경조직을 둔화시키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기업 경영과 국민 일상에 투입하는 세세 규제리스트는 줄잡아 1만1000건이 넘는다. 위원회가 5일 국토해양부 소관 규칙 1,005건 가운데 94건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지식경제부 등의 규칙 검토에 나선 것도 것처럼 양산된 행정규칙의 폐해를 가늠해보게 한다.

기업규제 행정규칙의 또다른 그들은 부패에의 유혹이다. 공무원의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재량은 검은 대가를 자청하든지 권유받을 소지가 돼왔다. 규제→부패, 부패→재규제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제·개정된 법령 579개 가운데 101개 법령에서 165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출해 지난달 20일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기획재정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 가능기업수 확대(1,300개 → 2,200개)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입찰참가자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별로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은 BBB⁻ 이상으로 되어 있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등을 사전에 종합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신용도 하락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신용평가 적격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개선안 및 효과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단독계약 포함)는 1단계(BBB⁻ → BB⁺),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2단계(BBB⁻ → BB⁰) 하향 조정

* 공동수급체 : 2인 이상이 공동계약이행을 위해 결성한 실체

-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들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 (1,300개 → 2,200개)

법령에 근거 없는 선금지급요건 삭제

국고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금지급요건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계약이행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삭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서의 선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에 관한 기준만을 두고 있음

* 공사·제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용역 :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

- 법령에서 일정기준의 계약금액만을 초과하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규칙인 예규에서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 것이라는 추가규정을 두어 선금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선금 지급기준 중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간요건(계약 이행기간 60일 이상) 삭제
- 선금지급 활성화 및 기업불편 감소

“부당한 4백만 원 과세, 왜 과세전적부심사 안되나”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K씨,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받은 4백만 원의 과세예고통지가 지난해 낸 세금과 차이가 너무 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 했으나 5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젠 세액 3백만 원 이상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 권리구제 확대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원료용 주류 판매시 출고 승인단계 축소

소주·맥주 등 주요주종의 원료용 주류를 제조자에게 판매시 복잡한 승인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국세청장)를 2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로 간소화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5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원료용 주류를 주류제조자에게 판매시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검토 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출고하여야 함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의 3단계 승인단계를 거치면서 서류이송 등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소주·맥주 등 주요주종의 원료용 주류를 제조자에게 판매시 복잡한 승인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국세청장)를 2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로 축소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처리기간 15일→10일로 단축)



세무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세무조사 시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 등을 정비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강화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선정 관련 국세청장 또는 관할관서장의 재량 규정이 불명확 함
-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 소득세 및 법인세 정기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위원회로, 조사대상 선정비율·조사 제외기준 등을 심의

개선안 및 효과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선정내용을 명확하게 개선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필요한 범위 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구체적으로 공개
 -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강화

이자율, 가산율 등 산정시 최근 이자율 반영

최근 하락한 정기에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금 가산율을 인하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금 가산율' 계산 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부연납 :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

- 그러나 관련규정에서 최근 이자율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민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최근 하락한 정기에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이자율(5%→3.4%) 및 가산율(1일 10만분의 13.7→1일 10만분의 9.3)으로 인하
- 국민의 세금부담 완화

관세청

환율상승폭 연동을 통한
신용담보한도액 상향 조정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담보액 산정시 납세실적 이외에 환율상승률을 반영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제9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성실납세자에게는 관세 납부대상물품에 대해 별도의 물적 담보제공을 생략하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금융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용담보한도액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따라 설정되나,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 초과분 만큼 현금 등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기업부담 발생

개선안 및 효과

-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전년도 평균과세환율상승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상향 조정
-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 완화

관세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규정 상위법령화

고시로 규정된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3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관세법」은 관세조사 전 사전통지의무만 규정(제114조 제1항)하고 있으며,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하면서 20일 이내 범위에서 세관장이 관세조사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 관세조사 :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자 방문 조사 제도

-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고시로 규정된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으로 규정
- 국민(수출입업체)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확대 · 보호

관세청

관광목적 크루즈선의
승객 하선 허용

크루즈선이 개항 외 항구에 입항시 선내 대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승객의 하선을 허용하여 관광활성화 촉진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15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크루즈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경우 원상을 회복(긴급 피항 선박, 해난구조 선박 등인 경우)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전원 선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함

* 개항(開港) : 외국무역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항구로서 수출입 화물의 하역과 환적이 이루어지고 내외국여행자들이 출입국하는 장소로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개항으로 지정(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제주항 등)

- 이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여객선·크루즈선 승객의 하선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지역 관광진흥에 걸림돌이 됨

* 제주도의 경우 제주항에서는 크루즈 정박 및 하선 허용되나, 서귀포항에서는 금지됨

개선안 및 효과

- 관광목적의 여객선·크루즈선 등이 개항이 아닌 지역 입항시 승객 하선 허용
- 개항이 아닌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연수 품목 확대 및 기간의 합리적 조정

공공물품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지정물품을 확대하고, 차량·컴퓨터 등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 「내용연수표」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내용연수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조달청은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량, 컴퓨터 등 1,044개 물품을 지정 고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물품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지정물품을 확대하고,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품 Life Cycle 단축에 따라 차량, 컴퓨터 등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내용연수 지정물품을 확대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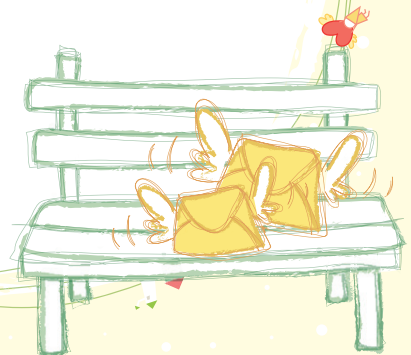
※ 내용연수 연장품목 203개(절감액 → 3,864억원)

신규지정품목 599개(절감액 → 791억)

- 공공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국가예산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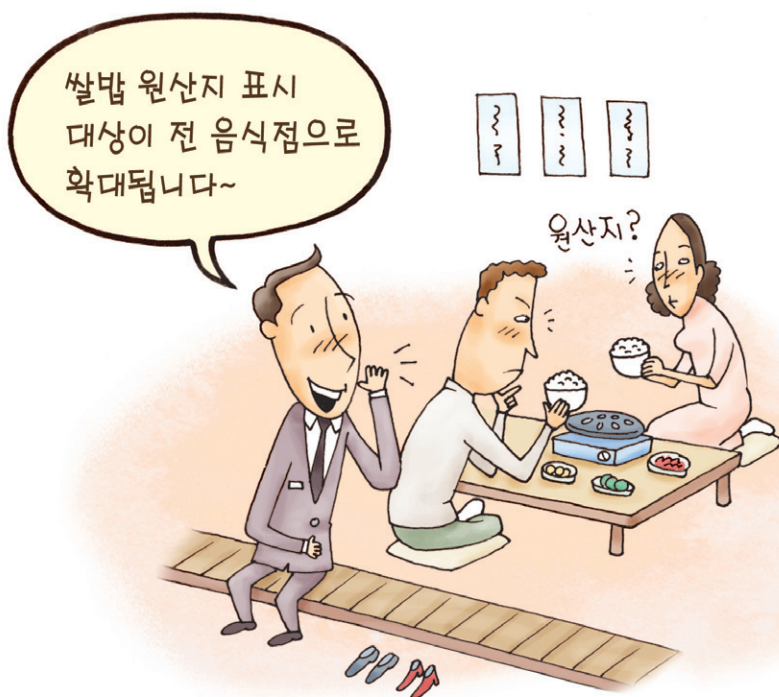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매일 먹는 인근 식당 밥, 원산지 궁금해”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L씨, 하루 두 끼를 외식으로 해결하는 그는 대부분의 인근 식당들이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의 육류 원산지 표시는 철저히 하면서 쌀밥 원산지 표시는 들쭉날쭉해 국산 쌀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쌀밥 원산지 표시대상 기준을 궁금해 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쌀밥 원산지 표시대상이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에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국산 쌀 매출증가가 기대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 쉽게 알 수 있었으면”

평소 생선을 즐겨먹는 P씨, 최근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많이 유통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 P씨는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커지는 것 같라며 이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이 확정된 업체 및 해당 내역은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절차 개선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한후 부당사례 적발시 보고만 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어 이를 마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7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경작사실 등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 또는 조합에 신고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 이러한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은 부정유출의 소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사례 적발시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정유출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이 부족함



개선안 및 효과

- 농업용 면세유류 부당사례 적발시 부정유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러브미(LOVE-米) 업무표장의 사용기준 완화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브랜드로 3년 연속 평가를 받은 쌀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토록 하고 있는 러브미 업무표장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많은 농가참여 유도

※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 별표1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러브미는 소비자에게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비자와의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만든 인증 표장으로 “브랜드 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평가를 받은 브랜드는 농림부에서 인증하는 러브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브랜드 쌀 평가 :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의 우리 쌀에 대한 평가로써, 전체 쌀 브랜드(1,700여개) 중 일정기준 이상의 브랜드 약 50여개를 평가하여 매년 12개를 우수브랜드로 선정

- 현재 국내 생산쌀의 종류(1,700여개 브랜드)와 선정과정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브랜드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브랜드 선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1,700여 브랜드 중 3개 브랜드가 러브미 인증마크 인증을 받음

개선안 및 효과

- 러브미의 인증기준을 3년 연속 우수 브랜드선정에서 2년 연속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 국내 쌀소비 촉진 및 농가 매출 증대

어획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어민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획수산물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3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그러나 어획되어 생산되는 수산물에는 별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나 위생가이드라인 등의 관리기준이 없음

- 수산물은 농축산물에 비해 선도가 빠르게 저하되고 날 것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획단계에서부터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나 어선의 노후화, 저온경매장의 미비, 경매장 내에서의 비위생적 수산물 취급 등 선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안 및 효과

- ‘어획수산물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고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 및 어선·위판장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
-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을 높여 소비자 건강과 안전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편법 방지 개선

가공식품의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제4조

진행 중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3년간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되는 등 잦은 원산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수입산' 으로 표시할 수 있음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예시〉

원 칙	예 외
돈육(국내산 〇〇%, 미국산 〇〇%)	돈육(국내산, 수입산)

- 그러나 일부 육가공업체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햄 등의 원산지별 원료 육 함량비율 표기를 생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인 국내산과 수입육 혼합비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선안 및 효과

- 가공식품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원산지별 혼합 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 %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수입산"으로만 표시
-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 보장



친환경유기농자재 유통기간 등 표시사항 의무화

의무사항이 아닌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생산 또는 수입연월일, 사용방법, 유통기간 등의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여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제10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일반농약과 달리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경우에는 생산 또는 수입연월일, 유통기간 등의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님
 - * 일반농약은 그 용기나 포장에 농작물별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시기, 약효보증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경우 포장지에 사용법 · 유통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유기농자재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 친환경유기농자재 : 사람, 가축 및 환경에 무해하면서 토양개량이나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자재 및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활용되는 물질을 총칭

개선안 및 효과

-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생산 또는 수입연월일, 사용방법, 유통기간 등의 표시사항을 의무화
-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신뢰성 확보 및 농민들에 정확한 정보 제공
 - * 2010. 5월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친환경유기농자재는 1,071종에 이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캠핑장 줄서기 입장은 시간 낭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유명산을 찾은 서울의 L씨, 자연휴양림 캠핑장을 예약하려 했으나 예약이 불가, 줄서기 대기표를 받아 입장하는 데에만 반나절이 걸렸으며 소중한 휴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캠핑장 입장방식에 불만을 터트렸다.



🍌 이렇게 해결했어요!

“전국 35개 국립자연휴양림 캠핑장,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대신 즐거운 캠핑시간이 늘어납니다.”

* 캠핑장 : 야영장, 야영데크, 몽골텐트, 오토캠프장 🌈

“등산객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받는 것 이해 안 돼”

평소 등산을 즐기는 울산의 K씨, 신불산을 오르는 여러 등산로 중 유독 자연휴양림 입구를 지나는 등산로에서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의문점을 제기,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등산객들에게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동절기(12월~3월)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됩니다. 현실적으로 급수 시설, 캠핑장 사용 등이 불가능한 동절기를 시작으로 전면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산림청

보전산지내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보전산지 내 일정시설을 설치할 경우 진입로를 목적사업 면적과
일정 비례하여 개설 허용

※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4 제7호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보전산지에서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에만 임시적으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해 공용·공공용과 국가 기간산업시설 및 농림어업인의 소규모 생산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 보전산지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어 보전산지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은 보전산지 내에서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나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는 시설 설치 불가

개선안 및 효과

- 보전산지 등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이 건축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하의 진입로 개설 허용
- 보전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국민 편익 증대

국립수목원 관람예약시 요금결제방법 다양화

국립수목원의 입장료 결제방법이 '카드결제'만 허용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폰뱅킹'방법 추가 등 예약·입장관련 종합적 정비

※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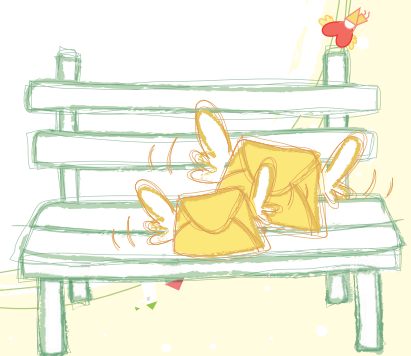
- 현재 국립수목원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장인원(1일 5,000명, 토요일 3,000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음
- 국립수목원의 예약시 사전결제를 하고 있으나 결제방법을 신용카드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

개선안 및 효과

- 카드결제와 더불어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등 결제수단 다양화
- 국립수목원 이용자 편의 증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폐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유료로 발급(건당 800원)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건당 800원의 발급수수료를 부과함
-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에게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현황

	2007년	2008년
발급건수	4,141,302 건	4,230,282 건
발급비용	3,278,028천 원	3,439,613천 원

개선안 및 효과

-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폐지
- 국민부담 완화 효과 : 연간 약 33억 원

〈개선된 지방세납세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납세증명서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처리기간(즉시) This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immediately
(생 략)		
구비서류 : Attachments	①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②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에 한함 Taxpayer's Identification(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③법인등기부등본(Copy of Corporation Registration)	수수료 Fee 없음 Free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개선

우수정보시스템 위원 선정이 장관추천으로만 이루어져 자의개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지침」 II.다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시스템을 선정
-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8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만 선정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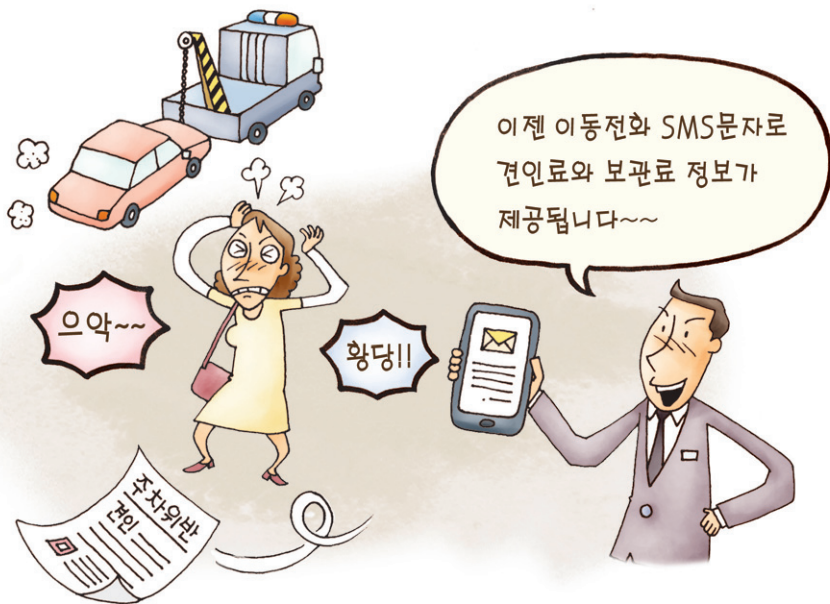
개선안 및 효과

- 위원 선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타당한 자격과 기준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예고 없이 사라지는 차, 견인시 알려줬으면”

대전에 사는 주부 A씨, 잠시 길가에 주차를 하고 은행에서 불일을 보고 나온 사이 자신의 차가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것을 알았다. 게다가 해당 통지서마저 강한 바람에 날아가 버려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로 황당하고 불편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젠 주차위반으로 인한 견인 시, 이동전화를 통해 상황이 신속하게 통지되고 SMS 문자를 통해 견인 및 보관료 정보도 제공됩니다.” 🌈

경찰청

외국인에 대한 심야조사 시 참여인 문제 개선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 시 가족·친족 등의 심야조사
참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은 “19세 미만인 자·노약자·장애인” 피의자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심야조사(자정부터 오전 6시)를 할 경우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들 피의자가 요구하면 가족·친족 등의 심야조사 참관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야조사 참관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 최근 외국인범죄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외국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의 심야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자·노약자·장애인”과 같이 참관을 보장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

이주여성 및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통역 및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

※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수사진행사항, 피해자진술권 등 형사절차 상 피해자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외국인 범죄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청됨
 - 특히 언어장벽 · 법제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처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역 · 전문상담 등의 제공이 필수적임

개선안 및 효과

-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통역 및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
-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청원경찰 임용시 신체조건
제한규정 폐지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남자 160cm, 여자 150cm 이상), 체중(남자 50kg, 여자 43kg 이상), 시력(나안 0.2, 교정 0.8 이상) 등 신체조건 폐지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청원경찰 임용신체조건으로 신장(남자 160센티, 여자 150센티 이상), 체중(남자 50킬로그램, 여자 43킬로그램 이상) 및 나안시력(0.2)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도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08년 7월 1일부터 채용조건 중 키,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였음에도 청원경찰의 키,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 범인제압, 사격능력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체력적인 능력은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 낼 수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남자 160cm, 여자 150cm 이상), 체중(남자 50kg, 여자 43kg 이상), 시력(나안 0.2, 교정 0.8 이상) 등 신체조건은 경찰공무원 임용시에도 폐지되었음을 감안하여 삭제

호송시 수갑(포승)사용이 제한되는 사회적 약자 확대

고령자·장애인·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수갑(포승)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예외대상에 임신부를 추가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인들을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자·장애인·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포승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임신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갑(포승) 사용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선안 및 효과

- 임신부 호송 시에 수갑과 포승 사용의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
-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 및 태아 보호 강화



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 신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둬
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도모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건 중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등 수사상 감정이 필요한 사건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09년도에는 교통사고 43만9천86건 가운데 1천92건(0.25%) 이의신청이 발생

- 그러나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없어서 공정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 지방 경찰청별로 교통학자와 법률·사고 분석 전문가 등 4~6명으로 구성되며 전국에 총 117명이 위원으로 활동

개선안 및 효과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둬으로써 이 해충들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도모

이동전화 위치정보 시스템 개선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 시 가족관계여부를 호적전산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호적법 폐지에 따라 조회가 불가능한 바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시스템을 새로 구축

※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제5조의3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위치정보 제공 절차는
 ① 당사자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당사자, 당사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 ② 소방관서장이 호적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간 관계 확인 ⇒ ③ 소방관서장이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이동통신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
- 그러나 '08.1.1.부터 「호적법」폐지로 호적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되면서 호적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전적으로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됨

* 위치정보추적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함에 따라 즉각 대응이 어렵고,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통해 가족관계 여부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시스템 마련
- 이동전화 위치정보추적의 신속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소방방재청

소방관서 구매장비 실태확인
제도개선

소방장비 납품비리 방지를 위한 실태확인을 년 1회 이상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 「소방장비 검사전담반 운영규정」 제8조 제3항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관할 소방관서에서 구매하는 소방장비의 중간검사와 납품검사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반 체제의 실태확인만으로는 부패예방 효과 미흡함

* 전담반의 구성 : 반장 1명(지방소방경 이상), 전담반의 인원은 기동장비, 진압장비, 구조장비 등 장비분야별로 시·도별 장비구매 수요량에 따라 구성 (2~4명)

- 소방관서에서 납품받는 소방장비는 소방관과 화재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납품관련 부패·비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방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됨

개선안 및 효과

- 소방관서의 소방장비 구매관련 부패예방을 위하여 구매장비 실태확인의 주체를 변경(전담반 →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실태확인 주기를 명확화(정기적 → 년 1회 이상)
- 소방관서의 소방장비 구매관련 부패예방 장치 강화

“대극장 중심 무대시설 안전검사 기준 따르기 어려워”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법에 따라 자체 검사계획을 마련해 매년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 여부를 수시검사하고 있지만 자체검사계획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 항목 등이 소규모 공연장에 적합하지 않은 게 많아 매년 자신이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이렇게 해결했어요!

“소규모 공연장에 걸맞은 수시검사 항목이 생기고 자체정비계획서가 별도로 마련됩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가능해집니다.” 🌈

양성기관에 따른 차별적인 국외 여행인솔자 자격부여 규정 개선

교육내용 · 시간 등에서 전문교육기관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여행업체 사내연수기관 이수자에게는 당해업체 근무에 한정하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규정 개선

※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요령」 별표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여행사가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두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내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자소양교육을 이수한 자’로 두어야 함
- 국외여행 인솔자소양교육기관인 사내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설, 교육내용, 강사의 자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연수기관양성교육 이수자는 당해업체 근무에 한하여 국외여행 인솔자격을 인정받음

개선안 및 효과

- 양 교육기관의 국외여행 인솔자소양교육 대상자 기준 및 교육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사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게도 소속업체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발급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 징수기준 완화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가족단위의 미술관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관람료 면제대상·감면대상을 확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사회환경의 변화(5일제 근무, 토요일 격주수업 등)로 인해 가족단위의 미술관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이 6세 이하인 자, 외국사절단,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되어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대라는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대상 확대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관람료 면제대상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6세 이하인 자 • 65세 이상인 노인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민 및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 등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가족 •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관람료 감면대상	관련근거 없음	• 19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 사회적 약자 등 문화향유권 신장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광지 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 추가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관광상품의 개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관광단지 조성 시 설치시설에 ‘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점증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관광지 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명시
- 의료관광 분야 민간투자 촉진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20년된 여객선 무조건 처분... 한류스타에 소양교육... ‘시대착오 행정규칙’ 1,139건 고쳐

건당 年1,465억 경제효과

여객선 선주들은 지난해까지 20년이 지난 배는 외국에 헐값에 팔아야 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를 내다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령(船齡)이 20년 넘으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행정규칙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낭비 비용만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한류스타 등 연예인이 해외에서 공연하기 위해 소양교육(4시간)과 현지교육(2시간)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노동부의 해외취업 관련 행정규칙이 국제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27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139건을 바꿨다. 행정규칙은 관련법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행정편의를 위해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정한 내부 규정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사실상 법령으로 취급돼 각종 규제와 불편 사

례가 빈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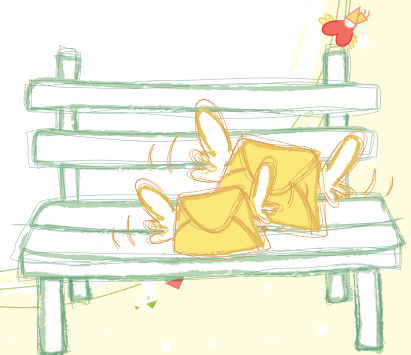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물로 경제적인 효과도 컸다. 외부기관의 검증 등으로 경제적인 효과 추산이 가능한 69건의 경우 연간 경제적인 효과가 10조 1,137억 원에 달했다. 행정규칙 한 건을 고쳐서 연간 1,46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를 낮추면 오히려 친환경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연간 1조 4,47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972건을 추가해 10월 말까지 전체 37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만 1,000건에 대한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부처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법무부
대검찰청
문화재청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사전 민원상담제도 활성화

업무협의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사전에 군부대와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관리규정」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업무협의를 민원인은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설배치요도 및 각종 공사계획 관련 도면은 직접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관련법 상 행위가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도면을 준비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군 협의에 따른 비용(100만원~200만원)이 불필요하게 과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재 협의시 추가 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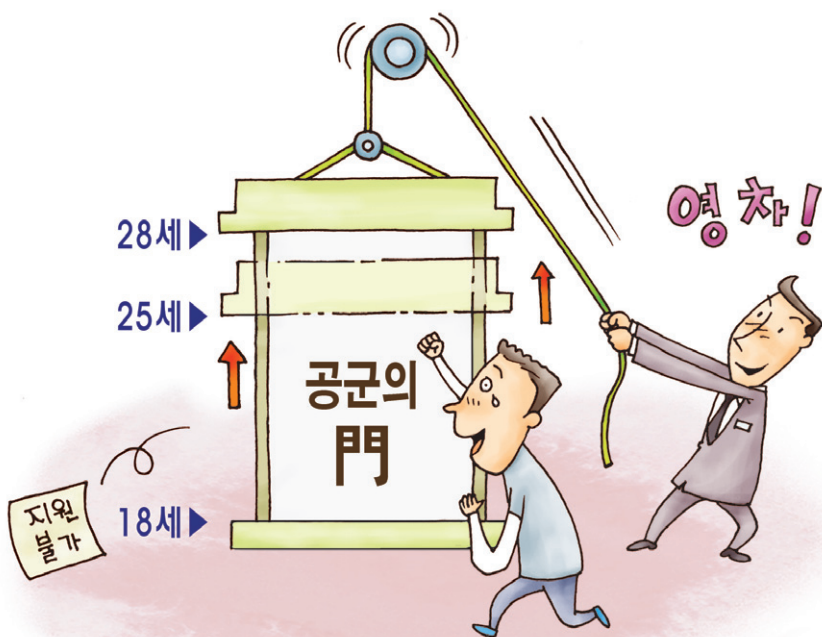
개선안 및 효과

- 업무협의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사전에 군부대와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화 하도록 개선
- 연간 24억 원 정도의 국민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내 나이 27세, 공군 현역 지원 왜 안 되나”

대학원생인 서울의 L씨, 27세란 늦은 나이에 공군 현역병에 지원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하니 육군 현역병으로 지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원가능연령 폭이 육군보다 현저히 좁은 공군의 자격 요건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공군 현역병 지원 자격요건이 ‘18세 이상 2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장기복무제대군인 사업대부 지원요건 완화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대부 지원요건을 본인 사업수행자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배우자사업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 생활안정에 기여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개선 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대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대부 한도액 : 2,000만원
 - 연이율 및 상환기간 : 4%, 7년 균등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등
 - * 대부실적 : ('06년) 11,088백만원, ('07년) 16,821백만원, ('08년) 10,728백만원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업대부 대상을 본인으로 한정하여 고령 및 질병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대상을 제대군인 본인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의 배우자로 확대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정착지원 강화로 현역장병 사기 고취

불합리한 행정규칙 40건이 올바르게 개선되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선안 중에서 장기복 무제대군인 사업부분을 배우자까지 확대한 부분이 제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부서관으로 퇴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보았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수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많이 찾아내 바꾸어 좀더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현



국가유공자상이자 예우용 교통카드 발급 확대

국가유공자 상이자에게 발급하는 LPG복지카드에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무임기능을 탑재한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교통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지침」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08.11.17부터 서울시 거주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LPG복지카드에 전철 무임기능 및 서울시내버스 무임기능을 부가한 교통카드 발급 · 시행중임
* 대상인원 : 18,470명 / 발급인원('09.2.20현재) : 11,792명(63.8%)
- 더 많은 국가유공상자들이 전철 및 시내버스 등 수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함

개선안 및 효과

- 교통카드 미시행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여 LPG복지카드에 시내버스와 전철 무임기능을 탑재한 교통카드 발급을 연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편의 제고



국민권익위는 슈퍼맨 같다는 생각을 해보아요. 예리한 후각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냄새를 맡고, 초능력을 가진 눈을 통해서 카리스마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을 보면 이런 상상이 저절로 나네요. 하하하 글에서 국가유공자 상이자에게 복지카드를 경기 지역으로 확대하였다는 글에서 행복한 마음이 생기네요. 내년에는 지방에도 적용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처럼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서 개선해 주면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 예상해 봅니다.

김영호



외국인보호소에서 전자충격기 사용제한 범위 명확화

외국인보호소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자살 또는 자해·타인 위해(危害)·도주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0조

개선완료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충격기는 일시적으로 신체를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비임에도 사용범위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전자충격기의 자의적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개선안 및 효과

- 외국인보호소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살 또는 자해·타인 위해(危害)·도주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충격기 남용 방지 및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양육시 외국인 체류허가제도 개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 취득 전 이혼한 후 불가피한 사
정으로 국외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체류
를 허용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나.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
는 경우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외국인의 모국 등 국외에서 자녀를 양육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체류자를 양
산하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및 효과

-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외국인 배우자가 지정받은 경우 등 외국에서의
양육이 불가피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내 체
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향 조정(1~2년 → 최대 3년)
-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 및 외국인 권익 보호

벌과금 체납처분시 압류금지 재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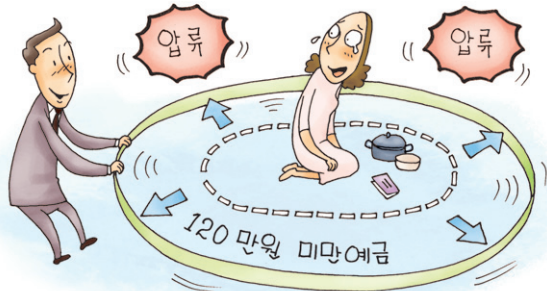
벌과금 체납처분시 압류금지 재산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120만원 미만인 예금' 등의 소액금융재산을 포함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

개선완료

● 현황 및 문제점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벌과금 체납자의 최소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 개선안 및 효과

- 벌과금 체납 처분을 할 때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납입액과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재산은 압류할 수 없도록 개선
- 체납자의 최소생계 유지 보장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판정기준 마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여부 및 발굴범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시행 장기화 및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조사 선정기준 마련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진행 중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위원 등 관련전문가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사업부지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거나 유적의 존재가 의심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은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발굴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범위 설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시행의 장기화 및 비용부담 등을 방지하고자 문화재 조사기관 등에 대한 로비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건설공사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비용은 건설시행업자가 부담

개선안 및 효과

- 지표 및 발굴조사 과거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 후 구체적인 발굴조사 선정기준(안) 마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

현상변경허가 기준범위 문화재별 세분화

문화재의 입지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별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세분화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개선완료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보호법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영향검토지역) 안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 영향구역 설정 시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불편 및 민원이 과다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함

● 개선안 및 효과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문화재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단계로 세분화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일관성 없고 불합리한 행정규칙들로 불만과 불편함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개정을 제안하여 보다 융통성있고 바람직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행정규칙 컨설팅으로 다양한 부처,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충진

전체 행정규칙 개선과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영향평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발 행 일 | 2010년 6월 18일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www.acrc.go.kr

기 획 · 편 집 |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02-360-6832)

디자인 · 인쇄 | 리드릭(☎ 02-2269-1919)

